2023년 제3회

[붙임]

회 의 록

○ [의안번호 제2023-6호]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(안)

위원	의견내용
김**	• 인권리스크 개선과제 사업운영6-협력업체관리 이행 시 상시 소통창구 담당자의 인권 업무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함
ㅂ.	•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이행 시 인권리스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• 협력업체 인권실태조사 관련 협력업체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 필요함
김**	 보고서에 지표 개선내용(수정·삭제된 지표 표기) 표기 제안함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특화 지표 개발은 좋은 성과임 ●인권영향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과제별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은 공사 운영과 사업에 실질적 영향이 크며 의미가 있음
김**	 적절하게 인권영향평가가 진행됨 고용상비차별 항목 중 차별금지 내용을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사업운영 평가 지표 중 협력업체가 이주노동자를 채용 시 부당한 처우 방지 점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
하**	●불필요한 지표를 삭제하고 「탄소중립법」을 반영한 지표개선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●도출된 인권리스크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음(단, 계약 체결 시 안내자료 배포 보단 직접적 인권교육 지원 등 도입 검토 필요)
0]**	• (기관운영) #2-19번, #4-3번: 향후 현재 내부대상 조사지를 활용하여 시행검토 • (사업운영) #5-7번 교육 대상·직무 등 내용 명시하여 교육 시행

○ [의안번호 제2023-7호] '23년 인권리스크('22년 도출) 개선과제 이행실적 평가

위원	의견내용
김**	• (기관운영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고객응대근로자 보고조치 및 「근로기준법」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피해자 보호 책무의 내용 부각 필요 • (사업운영1) 샤워실 내 부스 칸막이 설치 등 추가 고려 • (기타의견) 갈등·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조직문화 조성 고려
박**	• (기관운영2) 해당사업 및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 대상임을 명시하는 것을 보완 • (사업운영2) 공사 홈페이지(사이버감사실)에 입찰 관련 이의제기 접수 항목 추가 검토
김**	● 이행완료 ● (기타의견)안건자료가 많을 경우 대면회의나 온라인 회의를 통한 질의응답 방식 필요
김**	•이행완료 •(기타의견)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해야함, 당사자 간 해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약식조사가 필요함, 징계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함**	• 이행완료
0]**	• 이행완료 • (기타의견)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경영의 핵심 부분으로 향후 대면회의로 진행요청